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3177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찬호

피 고 1. B공동사업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강

담당변호사 최명수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6. 22.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와 피고 B공동사업법인 사이에 2017. 6.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D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6. 9. 체결된 물상보증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037,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관계 등

1) 원고는 E은행과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E은행'으로, 보험기간을 '2017. 5. 29.부터 2019. 5. 29. 24:00까지'로, 가입사항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보통약관(보험가입금액 24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F는 2007. 5. 1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7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5. 29.부터 2019. 5.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3. E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3) E은행은 2017. 5. 29. F에게 2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G로부터 D로 이전되었고 F는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무단 전출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며,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공동사업법인 사이에 2017. 6. 9.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7. 6. 9. 물상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물상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2017. 6. 16.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57,986,200원 상당의 백미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서울서부지방법원 H, I(중복)]를 신청하여 2018. 6. 7. 178,037,620원을 배당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8. 12. 28.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F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36736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20. 11. 12. ‘F와 D는 공동하여 68,938,9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별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7. 12. 20. E은행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F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3131호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16. ‘F와 D는 공동하여 221,120,9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제30 내지 34호증, 을가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물상보증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B공동사업법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의뢰로 주식회사 J이 2017. 10. 10. D에 대한 권리 및 신용 내역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후관리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또한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있는 것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인한 것이어서 이미 D에게는 자력이 없을 것이 예견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가 D인 점 등에 비추어 D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사후관리서의 작성 후로서 원고가 D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2017. 12. 10. 또는 2018. 12. 2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20.28㎡

2층 153.57㎡

3층 153.57㎡

4층 160.05㎡

5층 139.07㎡

옥탑1층

9.36㎡(연면적제외)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309.8㎡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5.92㎡, 끝.

